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5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부승찬
김한규 · 복기왕 · 박상혁
朴芝源 · 손명수 · 이정문
최혁진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의료·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부양가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미성년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부양가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 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 00분의 15(미성년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일 이전에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u>	⑥ <u>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5항</u>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⑦ 제5항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10)

1. -----

제7항-----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⑪ -----제10항----- ----- -----.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